

EU의 유니섹스 요율제도 도입을 통해 본 위험변수 및 위험세분화 의 조건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EU는 2012년 12월부터 성별에 의한 보험요율 및 급부의 차등화를 전면 금지함.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율 및 급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분류 시 경제적 효율성이나 집단 관점의 공정성 보다는 개인 관점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위험변수 도입을 통한 요율차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위험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 관점의 공정성과 집단 관점의 공정성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떠한 가치에 무게 중심을 실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 더불어, 민영보험의 위험세분화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위험의 사회적 연대성을 어느 정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보험사고의 빈도 및 심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별은 다양한 보험종목의 요율 및 급부 설계에 중요한 위험변수로 활용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여성의 보험가입기간 내 사망위험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정기 보험료를 납부하고, 여성 운전자의 예상손실액이 남성 운전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 다 낮은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함.
 - 다만, 미국의 미시간 주(1981)와 몬태나 주(1985), 벨기에(2008), 네덜란드(2008) 등은 자동 차보험에서 성별에 따른 요율차등화를 금지함.
- 그러나 2011년 3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성별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의 조건부 허용이 평등과 비차별 원칙을 명시한 EU의 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2012년 12월부터 보험요율 및 급부 결정시 성차별을 전면 금지함.
 - 2004년 EU는 상품의 공급과 접근에 있어서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보험요율

- 및 급부 차등화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였음.
- EU는 2004년 12월 채택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침(Goods and Services Directive, 이하 'GSD'라 함)에서 보험과 성차별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GSD Art. 5(1)에서는 성별에 따른 요율 및 급부 차등화를 금지하고 있음.1)
- 그러나 GSD Art 5(2)에서는 회원국이 성차별을 전면 금지하거나 성차별이 근거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상관성, 그리고 관련 데이터의 공개를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²⁾
- 이에 모든 회원국은 성별에 따라 생명보험과 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를 차등화 해왔으며, 벨기에 와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유니섹스(unisex) 요율을 2008년에 의무화함.
- 2007년 12월, 벨기에는 성별에 의한 요율차등화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³⁾ 2008 년 6월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Test Achats가 EU법 위반을 이유로 상기 법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벨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함.
- 이어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유럽사법재판소에 GSD Art. 5(2)가 Art. 6(3) of Treaty of EU에 명시한 평등 및 비차별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는 GSD Art. 5(2)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무효라고 판시함.
 - 통계적으로 남성이 사고를 많이 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개인별 사고 이력 등 다른 개인적 특성이 요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 성별에 따른 요율 및 급부 차등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EU의 유니섹스 요율이 역선택·도덕적 해이로 인한 평균 보험료 상승 및 경제적 비효율, 저위험자의 고위험자 보조 심화로 인한 불공정을 초래한다 고 주장함.⁴⁾
 - 유니섹스 요율이 적용되면, 무엇보다도 고위험군은 보험에 가입하고 저위험군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유인이 발생함.
 - 둘째. 전체 보험집단 내에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유니섹스 요율 적용 이후 평균보험료

¹⁾ Goods and Service Directive Art. 5(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all new contracts concluded after 21 December 2007 at the latest, the use of sex as a factor in the calculation of premiums and benefits for the purpose of insurance and related financial services shall not result in differences in individual's premiums and benefits".

²⁾ Goods and Service Directive Art. 5(2): "Member states may decide (...) to permit proportionate difference in individual's premiums and benefits where the use of sex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assessment of the risk based on relevant and accurate actuarial and statistical data..."

³⁾ Amending Law Art. 10(1): "a direct proportionate distintion may be drawn on the basis of gender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and benefits where sex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assessment of risk on the basis of relevant and accurate actuarial and statistical date."

⁴⁾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Oxera(2011), "The Impact of a Ban on the Use of Gender in Insurance".

가 인상됨.5)

- 셋째, 위험도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위험군의 경우 손실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유인이 있음.
- 넷째, 저위험군의 고위험군에 대한 일방적인 보조로 인해 집단간 불공정이 심화됨.
 - EU에 유니섹스 요율이 적용되면, 65세 남자의 연금소득이 평균 5% 이상 감소, 40세 여성의 생명보험 보험료가 평균 30% 이상 인상, 20세 여성의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평균 11% 이상 인상될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위험분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주: 위의 경제적 비효율은 해당 보험의 가격탄력성이 0보다 크고, 성별을 대체할 만한 위험변수의 개발이 어려운 경우를 전제함. 자료: Rothchild and Stiglitz(1976)와 Oxera(2011)를 재정리함.

-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성별에 따른 요율 및 급부 차등화가 경제적 효율성과 집단 관점의 공정성 보다는 개인 관점의 공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6)
 - 개인 관점의 공정성이란 각각의 위험은 수리적으로 그들 위험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집단 관점의 공정성이란 개인 관점의 공정성과 동일한 개념이나 그 대상이 개별 위험이 아닌 집단 위험이라는 점에서 상이함.7)
 - 보험에서는 집단 관점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법에서는 개인 관점의 공정성을 중시함.8)
 - 집단에 대한 공정성보다는 개인에 대한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과 일치하고, 성별, 종교, 인종에 따라 연금 요율 및 급부를 차등화 하는 것은 집단에 대한 공정성을 중

⁵⁾ 실제로 유니섹스 요율이 도입된 후 저위험군의 보험료 인상분이 고위험군의 보험료 인하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구체 적으로, 벨기에서는 2008년 자동차보험에서 성차별이 금지된 이후 30세 미만 여성의 보험료가 7~15% 인상된 반면, 동일 연령대 남성의 보험료는 3~4% 인하됨. 미국의 미시간 주에서는 1981년 자동차보험에서 성차별이 금지된 이후 25세 미만 여성의 보험료가 21% 증가한 반면, 동일 연령대 남성의 보험료는 15% 감소함.

⁶⁾ Torella, E.C. (2012), "Gender Equality after Test Achats", ERA Forum.

⁷⁾ 손광기(1997), 『자동차보험 위험등급제도의 분석과 개인위험 평가유형 발전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⁸⁾ Thiery, Y. and Schoubroeck, C. V. (2006), "Fairness and Equality in Insurance Classification", The Geneva Papers.

시한 나머지 개인에 대한 공정성을 무시한 결과임 9)

- 집단 관점에서 공정한 것이 개인 관점에서도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님.
 - 즉, 성별에 따른 요율 및 급부 차등화가 집단의 관점에서는 공정한 것이지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 구체적으로, 성별에 의한 위험분류 시 피보험자는 자신이 속한 위험집단의 예상손실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위험집단으로 이동할 수도 없음 10)
- 또한, 사회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을 벗어나 남녀가 매우 유사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 피보험자 간 생물학적 차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함.
- 따라서, 요율 및 급부 결정시 피보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습관, 직업, 주행거리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성별과 같은 집단의 특성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율 및 급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분류 시 경제적 효율성이나 집단 관점의 공정성 보다는 개인 관점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
 - Wit(1986)는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많은 위험변수가 공정성,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간의 존 엄성 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음.¹¹⁾

〈그림 2〉 EU의 위험분류 기준에 대한 무게중심 변화

경제적 효율성 집단 관점의 공정성 개인 관점의 공정성

- ➡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위험변수 도입을 통한 요율차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위험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주기적으로 이슈화되고 정치적 또는 정서적 이유로 무산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우리사회에 위험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반증함.

⁹⁾ 이는 Manhart(1978) 판결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인용함.

¹⁰⁾ 결과적으로, 성별에 근거한 요율차등화는 피보험자의 리스크 경감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¹¹⁾ Wit, G.W.(1986), "The Politics of Rate Discrimina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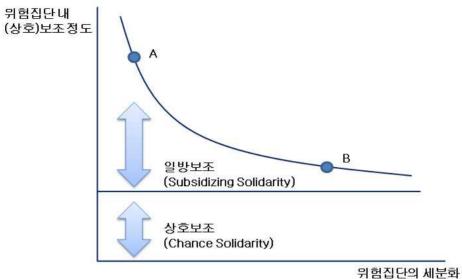
-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유니섹스 요율제도 도입과 그 논의 과정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경제적 효율성은 제도 도입의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위험변수 도입 시에는 경제적 효율성 뿐 아니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함.12)
- 둘째, 개인 관점의 공정성과 집단 관점의 공정성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떠한 가치에 무게중심을 실어야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서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집단 관점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반면, 개인 관점의 공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 지역에 따른 요율차등화는 피보험자 개인의 리스크 경감노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운전자의 거주지와 주요운행지가 같다는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개인관점의 공정성을 저해함.
- 셋째, 새로운 위험변수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것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수 반되어야 함.
 - 위험분류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진 효과는 보험급여(가입여부 또는 가입한도)가 고객의 선택 변수인 경우를 전제하며, 이는 고위험군 피보험자수 대비 저위험군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커질수록 증가함(〈그림 1〉참조).13)
 - 즉. 위험세분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은 시장의 가격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Ryan(1986)와 Schwarze and Wein(2005)은 위험분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의무보 험 보다는 임의보험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줌. ¹⁴⁾
 - Hoy(1982)에 따르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급여가 제공되고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의 위험세 분화는 저위험군과 고위험군간 재분배 효과만 초래함.

¹²⁾ 그 외에도 계리적 기준, 실무적 기준, 사회적 기준, 법적 기준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음. 상세 내용은 Kelly and Nielson(2006)과 손광기(1997)를 참고 바람.

¹³⁾ Rothschild, M. and J.E. Stiglitz(1976), "Equilibrium in competitive insurance markets: an essay on the economics of imperfect inform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0.

¹⁴⁾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Hoy, M(1982), "Categorizing risks in the Insurance Industr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7(May); Schwarze, R. and Wein, T.(2005), "Is the Market Classification of Risk Always Efficient? Evidence from German Third Party Motor Insurance", German Risk and Insurance Review.

〈그림 3〉위험세분화와 동일 위험집단 내 보조



위험집단의 세분화정도 (위험집단내 동질성정도)

주: 상호보조(chance solidarity)란 예상손해액이 유사한 가입자들 간 상호보조로서 행운의 가입자가 불운한 가입자를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방보조(subsidizing solidarity)란 위험집단 내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즉, 가입자 간 예상손해액이 다름) 저위 험군이 고위험군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Thiery and Schoubroeck(2006).

- ## 넷째, 민영보험의 위험세분화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위험의 사회적 연대성을 어느 정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보험 수리적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개인 관점의 공정성, 프라이 버시, 인간의 존엄성이 보다 중요한 가치로 간주됨에 따라 미국과 EU에서는 성별뿐 아니라 연령, 지역, 건강정보 등을 위험변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쟁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지역을, 미시간 주와 몬태나 주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성별과 결혼 여부를,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에서는 연령을 위험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그러나 위험분류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민영보험시장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위험집단 내 동질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고위험군 보조는 불가피함. kiqi